

(통권 22-5호)

예산·재정정책 정보

본 보고서는 충청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l : 635-5205)

2022. 6.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페이지
I. 경제	1. 충남경제	1
II. 재정	2. 지출구조조정 의 현황과 개선과제	3
	3. 재정사업 원가산정 체계 현황과 유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5
	4.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8
	5.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 제 개선방안	10
	6.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의 시사점	13
III. 정책	7.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	14
	8. 저탄소 친환경 행동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17
IV. 법률 제·개정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의원 등 11인) 재산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1억원 이하 확대	19

1. 충남경제-월간 충남경제5월호

- **(경기 종합)**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중국의 봉쇄조치 장기화 등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은 산업생산과 판매전력량의 꾸준한 증가세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며 현재 경기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다만, 원자재 수급 불안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영향으로 향후 경기는 둔화 예상
 - 또한 미국의 긴축정책 속도, 러-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자원국의 원자재 수급 조절 방침 등이 주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
- **(기업 경기)** 제조업 경기는 수출, 내수판매, 가동률, 생산설비 등의 부문에서 호전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금사정, 채산성, 인력사정 등은 다소 부진한 모습. 특히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영향으로 원자재구입가격 체감 및 전망치가 큰 폭으로 상승
 - 비제조업 경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에 힘입어 전월대비 소폭 개선, 그러나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당분간 경기 위축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산업 생산)** 전자부품, 1차 금속, 자동차 등 핵심제조업의 견조한 생산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
 - 세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요 전자부품과 1차 금속, 자동차 제조업 생산 및 출하 증가세가 지속되며 도내 산업 생산을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

- **(수출입)** 4월 충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한 94억 6,900만 불로 전자부품, 자동차, 철강판, 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성장추세 지속. 최근 중국에 이어 베트남으로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
 - 수입 역시 전년동월대비 31.6% 증가한 41억 불로 증가 추세 지속, 다만 주요 자원국들의 원자재 수급 조절방침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공급망 악화와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고용)** 고용시장 주요 지표인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고용률 등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지속하며 꾸준히 회복
 - 다만 기저효과에 따른 증가세 둔화 가능성과 더불어 불확실한 대외여건 환경, 연령·산업·지위 등 부문별 고용 취약계층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 **(물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물가의 높은 상승세와 더불어 원재료 물가 상승 영향이 외식,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5월 충남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더욱 확대
-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제한조치 완화 영향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가 큰 폭으로 상승. 특히 전통시장은 내달 전망치가 기준치를 넘어서면서 뚜렷한 호전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

출처 : 충남연구원(2022.5)

2. 지출구조조정의 현황과 개선과제

- 최근 추경 편성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가이드라인 수립에 있어, 새로운 사업집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서 기존 세출감액을 바탕으로 한 ‘지출구조조정’ 활용
 - 추가적인 재정부담 미발생은 긍정적인 측면, 임의적인 사업 축소 우려 및 단기적인 사업비 감축 시도에 따른 비효율
 -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합리적 예산 반영,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적극 활용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능별 배분 구조 합리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출구조조정 필요
- **(개선방안 1)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 추경에서 지출구조조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용·이월 발생 예상 사업에 대한 감액이 큰 부분은 사실 본예산 편성과 정에서 재정소요 예측 및 집행가능성 검토 불충분 방증
 -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은 21개 부처 137개 사업(세부사업 기준)으로, 2020년도 예산액 1조 8,464억원 중 3,395억원(18.4%)만 집행
 - 사업계획 미비, 사업추진 지연 및 대외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을 분석·대응하여 본예산 반영 등을 통해 시정
 - 본예산 편성-집행부진 예상-추경시 지출구조조정-집행부진 해소-내년도 본예산 재편성 과정을 반복하는 등 적기 투자 지연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문제 해소
- **(개선방안 2)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환류체계 강화
 -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원칙을 명시하

- 고, 매년 실시하는 재정사업의 성과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
- 구체적인 평가 방법으로서 재정성과관리제도(성과계획서·보고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중심으로 운영
 - 각 사업 모두 평가결과 이후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환류 체계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
 - 특히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별 성과를 상대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경우, ‘미흡’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예산삭감 적용 여부가 제도 시행 시기에 따라 다소 달리 운영
 - 정부는 올해 미흡사업 예산의 1%(1.5조원 수준)이상을 지출구조 조정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 향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환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 필요

○ (개선방안 3) 세출예산의 기능별 배분 구조 합리화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출구조조정의 목적은 급변하는 경제·사회구조에 맞추어 세출예산의 기능별 배분 구조를 합리적 조정
- 이미 보건·복지 및 고용(일자리) 분야의 재정 투입이 상당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지출수요는 계속 증가 예상
- 보건·복지 분야의 합리적인 지출 통제 전제, 교육·지방행정·국방·사회간접자본(SOC) 등 예산 투입 대비 효과 분석 선행 필요
- 또한 OECD 등 해외 주요국의 기능별 재정투입 변화 추이도 참고하여야 할 것. 이러한 기능별 배분 구조의 변화 시도는 각 정부 부처간의 대립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재정거버넌스 구축 필요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22. 5)

3. 재정사업 원가산정체계 현황과 유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재정사업 원가정보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결정 및 성과평가를 위한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에서의 원가산정체계는 보고목적 및 계산방식 등의 측면에서 유사성, 국가회계에서 원가집계대상을 프로그램이라는 사업단위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
-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의 변동이 아닌 경제적 실질의 변동 시점을 거래로 인식함으로써 현금주의 회계에 비해 복잡하지만 정보이용자들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정확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의해 산정되는 정보의 차이가 큰 예로 용자사업. 용자사업을 세출규모만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가 과다계상되어 인식, 왜곡된 정보를 제공
- 국가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된 재정지출(원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발생한 비용과 수익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구분 및 관련 사업으로의 명확한 배부가 요구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로 발생하는 거래(예산거래)에 대하여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대응을 통해 발생주의에 따른 자산, 부채, 수익, 비용항목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요구
-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 중에서 국가 재정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은 각각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

- 국가회계실체는 행정형 회계가 사업형 회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회계실체별 특성을 고려
하여 몇 가지 예외사항을 규정
- 발생주의로 산정한 총비용이 현금주의로 산정한 총지출보다 크
게 나타난 점은 재정지출을 현금주의로 산정한 규모보다 실제
로 투입된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
- 2014~15년 총비용의 감소는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해
당기 인식된 공무원연금 급여비용이 15조원가량 감소한 것이
일부 기인, 2015~16년의 총비용의 증가는 2016년 자산재평가
로 인한 평가손실에 의한 것
- 2016년도를 제외하고 비배분비용으로 분류된 항목이 2010년
36.9조원에서 2019년 18.1조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한 것은 발생
주의 회계제도 정착에 따라 비용의 적절한 배분이 효과적
- **관리운영비 배분 실태**는 부처별로 매우 상이하여 관리운영비를
통해 해당 부처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 평가 시 부처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부처 간 비교에서는 해당 정보의
해석에 유의
- 프로그램 단위의 원가 집계는 내부 의사결정을 위하여 원가정보
를 실질 활용하기에 너무 광범위하며 공시된 프로그램별 비용
정보가 의미하는 바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를 활용한 분
석 또한 한계점이 존재
- 2019년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 이후 총원가를 발생시키는 프
로그램·단위사업 수가 2010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은

내부관리 목적에서 프로그램이라는 사업단위가 적절한지 고민

- 부처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부처운영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리운영비에 대한 비용분류가 일괄적용
 - 효율성을 고려한 행정형 회계에 대한 프로그램 수익집계 및 간접원가 배부의 예외허용에 따른 득실을 검토해보아야 할 시점
 - 자산취득이나 용자와 같이 지출액과 원가정보가 큰 차이를 두는 사업에서는 원가정보의 추가적인 효익이 클 수 있고, 발생주의 총원가의 개념은 원가회수가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예산 및 적정요금 산정 시 활용될 수 있음
- 기존의 통제 목적의 단식부가·현금주의 지출액에 비해 복식부가·발생주의 원가정보가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비용정보** 제공, 원가정보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정보이용자들이 충분히 활용가능한 형태로 재정사업 원가가 산출될 필요가 있음
-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불필요 정보를 생산하는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정부 부문의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정착 및 활용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발생주의 정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활용 노력 전제

출처 : 조세재정연구원(2022.5)

4.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 현행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제도는 비효율적인 지방도로시설의 과도한 투자 수요를 초래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방 도로시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면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한 자체 도로사업 규모가 줄어들고, 지역의 개별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애로가 발생함.
- 교통시설 국고보조금의 정책적 목표인 **외부효과 제고 및 불균형한 지역별 교통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함.
- 지역에 따른 차등보조율의 적용을 통해 국가 전체의 후생이 보다 크게 증진되는 지방도로의 건설을 촉진하고, 도로를 공급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지방의 매칭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별 교통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해소해야 함.
- 차등보조율의 기준 근거인 지역 내 도로의 외부효과 및 혼잡수준을 분석한 결과, 충청권 지역 도로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도로의 혼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도로 공급의 재정여건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세종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지역별로 가산되는 차등보조율의 적용과 더불어 국고보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도로 유형별 기준 보조율의 조정도 필요함.
- 국고 보조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역도로의 경우,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혼잡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국고보조의 확대가 요구됨.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경우 타 도로 유형보다 오히려 혼잡수준이 낮은 지방도로로 분석되어, 국고 지원의 정책적 근거 마련 및 국고보조율의 재조정이 필요함.
- 지방분권화의 지속적인 진전 추세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지방도로에 대한 국고 보조의 효과성 및 서비스 수준의 지역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도로 유지관리비를 국고보조 대상 비용에 포함하고, 포괄 지원 방식하에서 국고보조율의 사업 단위별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도로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의 편익이 대부분 지역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방도로에 국고보조금을 포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출처 : KDI정책포럼 (2022.6.)

5.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 인구감소 현상 등에 배경하여 빈집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
 -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의 조치, 재정여건이 열악한 데다 자진철거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어 지자체들은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한계에 봉착
- 빈집 소유자가 **자진 철거를 거부 배경**
 - 「지방세법」상 빈집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가액이 높지 않고,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게 되어 세금이 증가, 빈집을 방치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임
 - 노후·불량 빈집의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빈집의 소유자가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경감을 모색하는 세제적 인센티브 방안 분석
- 빈집은 주택에 사람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지칭하며, **일반적 빈집과 법적 빈집**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반적 빈집은 통계 작성의 대상이 되는 빈집으로서 매매, 임대, 미분양, 수리, 폐가, 일시적 이용, 상업적 사용 등의 사유로 조사 기간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함
 - 법적 빈집은 정책 대상으로 삼는 빈집으로서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빈집으로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람이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함
- 법적 빈집에 대하여 소재지나 그 대상에 있어서 다른 점이 존재
 - 「농어촌정비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 달리 빈집의 소재지를 농어촌으로 국한하며 주택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포함하고 있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농어촌정비법」과는 달리 무허가 빈집과 같은 사용승인·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 미분양주택 등을 빈집에서 제외하고 있음

○ 현행법상 빈집의 정의에 대해 다소 차이가 남에 따라 지자체별 빈집의 정의가 혼용. 현행법 간의 상호 통일성이 요구

- 빈집은 높은 우범성, 안전사고 위험성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오래 비워 둔 채 방치될수록 그 심각성은 심화
- 빈집 문제의 완화에 있어서 무허가 빈집도 중요한 부분인바, 이에 대한 정비도 참작해 나가야 할 것이므로 무허가 빈집을 정책 대상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언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을 정책 대상의 기준으로 삼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해 제외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빈집은 포함토록 함
- 동시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빈집 문제를 완화해 나가기 위하여 빈집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제 개선 목적의 정책 방안을 제언하는 바임

○ **세제 개선안 (제1안)**

- (철거 전) 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탄력세율 50% 적

용) 부과

- (철거 후) 부속 토지에 대해 유허가는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부과, 무허가는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부과

○ **세제 개선안 (제2안)**

- (철거 전) 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탄력세율 50% 적용) 부과
- (철거 후) 부속 토지에 대해 유허가는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50% 감면, 무허가는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부과

- 아울러 본고의 분석 결과, 인센티브 작용에서 상대적 우위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탄력세율(50%) 적용 및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50%) 세제안에 대하여 정책 입안을 위한 깊이 있는 고민과 정책추진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하는 바임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1.)

6.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의 시사점

-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있어 종래 교부세 배분방식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여 재산세와 다시 통합하는 방안은 그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음
- 현재의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를 고려한다면 최근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나 과세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납세자의 담세력에 부합하는 적정 부담의 보유세 부과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최근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된 것은 이것을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해야 한다는 과세체계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납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인식에서 기인
-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이전에 거론된 종합부동산세 배분방식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여 재산세와 다시 통합하는 방안은 그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
- 현재의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3~4년간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나 과세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절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납세자의 담세력에 부합하는 적정 부담의 보유세 부과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우선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22. 5)

7.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

- 고령자들은 인지능력 저하,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 접근성 등으로 인하여 젊은 층에 비해 금융착취나 금융사기 피해 위험 큼
 - 법과 제도는 금융피해에 대한 고령자 보호에 미흡,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해 제시된 방안과 그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고령자 금융피해는 가해자와 가해 경로에 따라 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② **금융착취**, ③ **금융사기**로 구분될 수 있음
 - 고령자에 대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는 금융상품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을 금융 거래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에는 고령자 금융피해 유형별 관련 법이 있을 뿐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이나 조항은 존재하고 있지 않음
 -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연령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이고, 「노인복지법」은 고령자를 위한 법이기는 하나 경제적 착취를 언급했을 뿐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정부 방안)** 금융기관이 고령자에 대한 금융착취 의심 사건을 공개하더라도 민사상·행정상 책임에서 면제되도록 규정한 미국의 「고령자 안전법」을 참고,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방안 제시함
 - 해당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 사건 발견 시 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직원의 면책조항을 두는 한편, 고령자에 대

한 불완전판매 방지,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

- 이를 위해 정부는 (가칭)「노인금융피해 방지법」의 제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및 그 하위규정 제정 추진

○ 해당 방안과 관련된 다음 두 가지가 주요 입법 쟁점

- 첫째,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인지 관련 현행법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 형식상 문제점임
- 둘째,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필요성과 그 수준에 관한 쟁점으로서 고령자 금융피해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한편, 규제
로 작용할 수 있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

○ **법체계에 대한 다각적 검토**

- 신고제도 근거 마련 등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정을 고려한다면, 현행 조문과의 체계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 가족,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등에 관해 규율하는 것은 금융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율 범주가 확대
-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기존에 고령자와 관련된 조항이더라도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행법 개정의 어려움 때문에 한편으로는, (가칭)「노인금융피해 방지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입법 기술상 고령자의 금융피해 특성을 고려한 조문 구성이 더욱 쉽고,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를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금융기관과 직원에 대한 명확한 책임 부여

-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와 관련된 금융기관과 그 직원의 역할을 강화할 때는 신고 의무 발생과 거래의 거절·지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관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에 책임은 부여하면서 그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면, 금융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증대와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고령자 안전법」과 자율규제기관의 규정 등에서 관련 교육, 금융 착취사건의 신고 및 방지와 관련된 금융기관, 규제 당국의 방침과 책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 시행 근거를 두고 있어 이를 적절히 통합하여 입법화해야 할 것임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1943호 (2022.5)

8. 저탄소 친환경 행동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 기후 위기는 우리에게 이미 닥친 현실이며, 암울한 미래를 막기 위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내연기관차를 더 판매하지 않는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건물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구조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며 시민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특히 서울 같은 소비 도시에서는 효과적인 기후 위기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
- **전문가조사와 사례 연구를 통해 제도 설계 틀을 구성**하고, 다시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의견수렴(시민토론모임, 인식조사)을 통해 제도 설계안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등 통계자료에 기반을 둔, 개별 행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기여량 등을 산정함
- 전문가와 시민의 인식조사 결과 ① 승용차 대신 가까운 거리는 걷기 ② 승용차 대신 자전거 이용하기 ③ 일회용 용기가 아닌 다회용기 사용하기 ④ 사용하지 않는 물건 기부하거나 무료 나눔 하기 ⑤ 재활용품의 적극적 분리배출(우유팩, 페트병, 병뚜껑, 안경테, 칫솔 등)의 5가지 촉진 행동이 도출됨
- 시민의 49.6%는 참여 쉽고 간편한 인센티브를 선호하며 87%는 걷기에 참여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 전문가 자문, 시민 FGD,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해 5대 친환경 행동의 촉진 방향을 검토한 결과 인센티브 확대 대상은 ‘승용차 대신 가까운 거리는 걷기’, ‘일회용 용기가 아닌 다회용기 사용하기’, ‘재활용품의 적극적 분리배출’ 친환경 행동으로 도출되었음

- 개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걷기, 자전거 타기를 대중교통 이용 할인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대안을 검토하여 정책적 의사결정을 해야 함
-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보상을 함께 지원하여 시민의 실천을 지속적인 행동으로 유지할 수 있는 플랫폼형 제도 운영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재원 마련에 관해서는 전문가, 시민 모두가 입을 모아서 민간재원과 온라인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의견, 즉 민간기업이 인센티브 제도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함
- 따라서, 서울시는 정보제공과 규제, 인센티브 부여 원칙 제공 등의 역할을 맡고, 민간기업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해야 함
-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시민의 수용성을 인식조사와 토론회와 같은 행동 전 의사표현에 근거하여 제도를 설계하는 결론을 제시하였지만, 실제 행동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실험을 진행하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기 전 검증을 거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임

출처 : 서울연구원 (2022.4.)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

○ 주요내용

- 2020년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향후 공시가격은 10년에 걸쳐 시세의 90%에 도달할** 예정이며, 2021년 12월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에 육박하는 등 공시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11억으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반면 재산세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하여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출처 : 국회의안시스템